

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

|  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|
| 접수번호         |    | 접수일자   | 처리기간 14일 |
| 신청인         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주소 | 연락처    |          |
| 가입신청<br>금융기관 |    | 계좌번호   | 계좌개설일    |

국세청장 통보 내용

의견 내용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81조제9항 및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35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(주소지 관할) 세무서장 귀하

|      |    |           |
|------|----|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없음 | 수수료<br>없음 |
|------|----|-----------|

유의사항

의견서는 저축취급기관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